

예 산 총 칙

2020년도 추경 1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461,496,398	43,844,892
일반회계	1,159,525,554	34,785,767
특별회계	301,970,844	9,059,125
공기업특별회계	220,261,665	6,607,85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73,808,895	2,214,26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7,612,423	2,328,37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8,840,347	2,065,210
기타특별회계	81,709,179	2,451,275
주택사업특별회계	3,628,252	108,848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4,591,535	137,74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400,000	12,000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6,092,014	182,760
교통사업특별회계	19,046,956	571,409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21,482,172	644,465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26,468,250	794,048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581,062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65,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